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이기현 · 박상혁
문진석 · 김문수 · 허영
박용갑 · 이상식 · 김동아
이성윤 · 윤종균 · 백승아
김준혁 · 전진숙 · 최혁진
박홍배 · 민형배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, 공직후보자의 정책 역량, 전문성 및 도덕성 등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절차에 해당함.

다만, 최근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합성과는 무관한 사생활 검증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으며,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 또한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직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의 경우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해당 인사청문위원

의 열람만을 허용하며,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자 함(안 제4조의2 신설 등)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인사청문 소위원회)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심사하며,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심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의2(비공개 자료) ① 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경우 위원은 열람만 가능하며,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「국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인사청문 소위원회) ①</u> <u>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</u> <u>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</u> <u>위하여 인사청문 소위원회를</u> <u>둔다.</u> <u>②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</u> <u>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</u> <u>를 심사하며, 그 결과를 소관</u> <u>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는</u> <u>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</u> <u>하여 결정으로 심사를 공개하</u> <u>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비공개 자료) ① 위원</u> <u>회는 후보자의 사생활을 현저</u> <u>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의</u> <u>경우에는 이를 비공개 자료로</u> <u>분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</u> <u>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자료</u> <u>로 분류된 경우 위원은 열람만</u> <u>가능하며, 이를 대외적으로 공</u> <u>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
	③ <u>위원이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「국회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
--	---